

납품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 _____ (이하 “을” 이라 한다)는(은)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대금(이하 “납품대금” 이라 한다)의 결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및 통지)

1. 을은 갑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갑이 지정한 은행 본점 및 지점(이하 “병” 이라 한다)에 납품대금 수금계좌(이하 “수금계좌” 라 한다)를 개설하고, 갑이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요청하는 제반서류(이하 “제반서류” 라 한다)를 갖추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1항에 의하여 갑에게 제출한 제반서류상의 내용에 변경이 생길 경우 즉시 갑에게 변경사항을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갑이 그 통보를 접수하기 전까지 종전의 약정내용에 따라 조치한 행위에 대하여 을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갑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 조 (납품대금의 지급)

1. 갑과 을의 납품대금 지급조건은 첨부한 납품대금 지급조건에 따른다 (별첨).
2. 갑은 을의 수금계좌에 납품대금을 입금(은행원장에 기재)함(뒀)으로써 납품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3. 2항에 의하여 갑의 납품대금을 지급위탁 받은 병이, 갑과 상호 연결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갑에게 지급위탁결과에 관한 전산자료를 전송하고, 이 전산자료를 갑이 출력한 경우 출력된 전산 자료는 을이 직접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하는 입금표 또는 납품대금 수령 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본다. 또한, 병이 확인 날인하여 갑에게 교부한 증빙서류(입금필통지서 등)도 을이 직접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하는 입금표 또는 납품대금 수령 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본다.

제 3 조 (납품대금에 대한 양도)

1. 갑이 대금지급기일전에 병에게 서면으로 납품대금에 대한 지급위탁을 하고 병이 이를 확인한 이후에만, 을은 대금지급기일전에 병에게 갑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설정하여 대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을이 1항에 의해 대출을 받은 경우, 갑은 병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갑은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1항에 따라 을이 대금지급일까지 병에게 대출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갑은 대금지급일에 납품대금을 을의 수금계좌로 입금한다.

제 4 조(착오입금분의 반환)

1. 본 약정에 의한 납품대금 지급과정 중 을의 수금계좌에 착오 입금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위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지체 없이 반환토록 한다.

제 5 조(책임과 의무)

1. 병이 을의 수금계좌로 지급하거나 기타 지급에 갈음하는 행위(대출금 상환으로 처리)를 한 경우, 갑의 납품대금 지급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보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을과 병의 모든 대금지급 사항에 대하여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갑은 을이 제 1 조에 정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제반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와 같은 지급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납품대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고, 또한 갑은 을에게 지급 연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3. 제 1 조 2항에 의하여 을이 통지를 지연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갑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6 조(약정 변경 및 해지)

본 약정은 갑과 을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 가능하며,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본 약정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위 해지의 효력은 위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다.

제 7 조(계약기간)

본 약정은 체결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본 협약 종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다. 그 이후에도 같다.

제 8 조(관할법원)

본 약정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적인 관할로 한다.

년 월 일

갑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17 을 :
현대제철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강현

(인)